

경기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칙

제정	2003. 9. 25.	규칙	제39호
개정	2010. 12. 26.	규칙	제92호
개정	2013. 3. 21.	규칙	제117호
개정	2016. 3. 31.	규칙	제175호
(전문)개정	2017. 2. 1.	규칙	제198호
개정	2018. 1. 8.	규칙	제255호
개정	2018. 4. 4.	규칙	제265호
개정	2019. 4. 1.	규칙	제283호
개정	2020. 5. 2.	규칙	제320호
개정	2021. 9. 29.	규칙	제365호
개정	2022. 1. 28.	규칙	제384호
개정	2022. 7. 5.	규칙	제407호
개정	2022. 9. 27.	규칙	제416호
개정	2023. 12. 21.	규칙	제456호
개정	2024. 1. 31.	규칙	제464호
개정	2024. 5. 17.	규칙	제497호
개정	2024. 11. 11.	규칙	제53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임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재단 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 인 또는 단체

라. 재단 또는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